

## 저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선박수리신고 관련 민원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화	FAX	코드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8	061-654-2129	620
여천해양수산사무소	061-686-3602	061-686-3605	621
광양해양수산사무소	061-797-6204	061-797-6211	622

○ 관련 법규

- 동 법규는 인터넷 통합검색이나 우리청 및 법제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주체는 **선장**(선주 또는 선박대리점)으로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직인을 기재·서명하여야 하며, **수리업체는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수리 안전을 위하여 **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PORT-MIS로 신청 시 해당 부서 **코드 번호**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와 허가서의 분류(FAX 접수가능)

구 분	선박수리신고	선박수리허가
관련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대 상	선박 내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 또는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20톤 이상의 선박 중 위험구역에서 작업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선박수리신고(허가)서 2. 작업계획서 3. 용접자격증 사본 4. 선원명부(선원이 용접을 하는 경우)	1. 선박수리신고(허가)서 2. 작업계획서 3. 용접자격증 사본 4. 선원명부(선원이 용접을 하는 경우) * 무가스증명서(위험물운송선박 등)

## 선박수리 [ ] 허가신청서 · [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번호	처리기간	허가는 1일 신고는 즉시
신청인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신청내용	선박의 소유자(용선주)			
	선박 종류 · 선명 · 톤수 및 호출부호			
	수리 범위			
	수리 방법			
	수리 기간			
	수리 장소			
	화물 적재 여부			
	허가(신고) 조건			
비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선박수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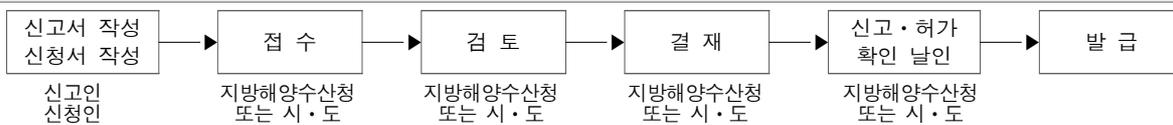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 선박수리 [ ] 허가 [ ]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신고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첨부 1****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1. 수리 선박명(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

2. 선박수리업체명 : (예) 종합기공 또는 본선작업

\* 외부업체와 대리점간 비상연락망 :

3. 작업 세부사항

작업구역	세부수리 내용	작업 방법

3. 취급장비

용접장비	외	종(ex. CO <sup>2</sup> 용접기, 전기용접기 등)
소화장비	개	

※ (안전관리자) 본인은 선박수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을 동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함에 있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소속·직책 :

성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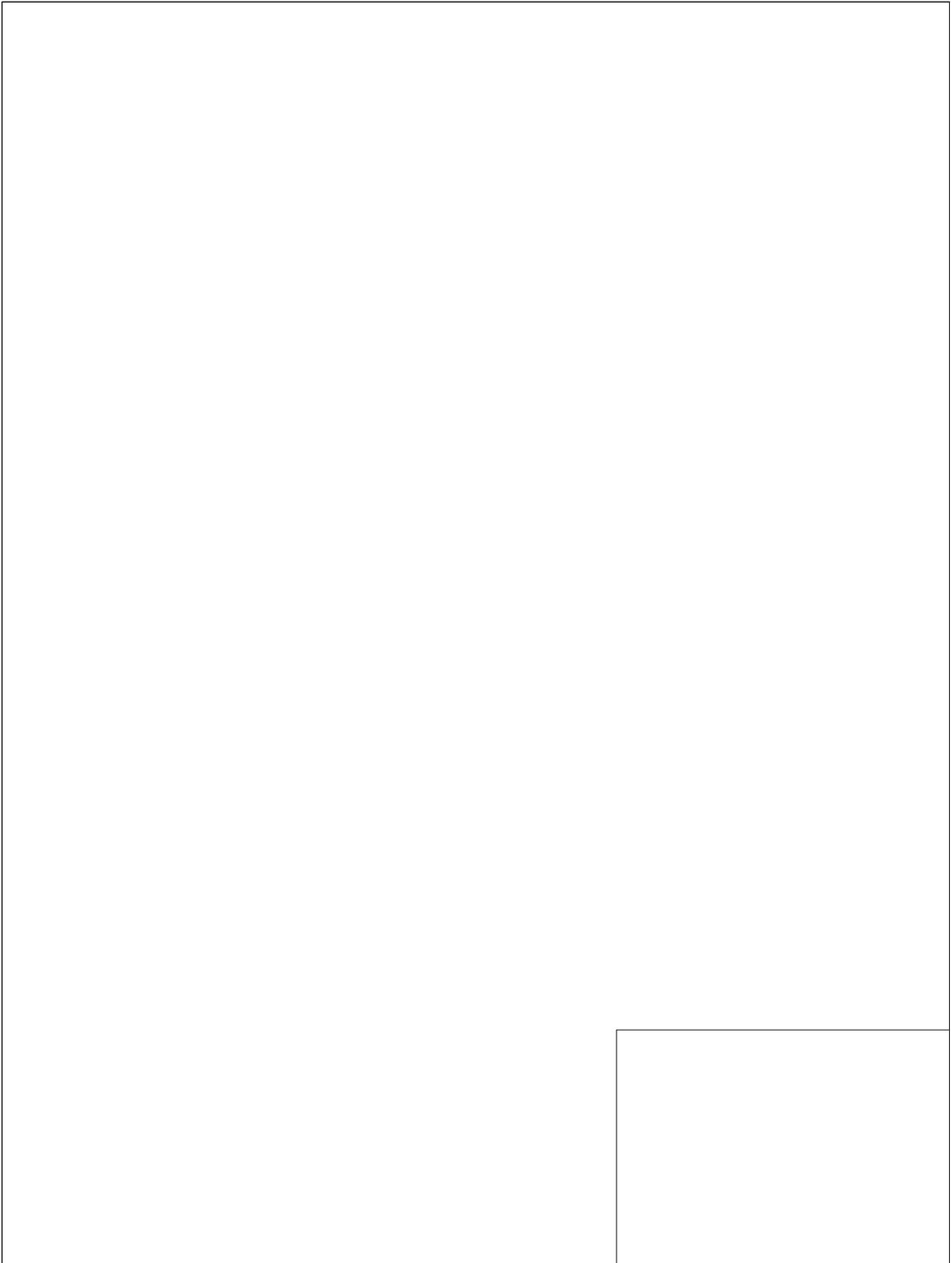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구분	용접자(생년월일)	작업자(생년월일)	비고
1			본선 선원이 용접할 경우에는 용접자란에 기입하여 주시고, 선원 명부 제출
2			
3			
4			
5			

※ 작업계획서 기재 시, 여백이 부족하면 이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등**



※ 자격증 여백 공간에는 수리업체 상호 명판, 도장 날인 바랍니다.

## 첨부 3

## 선박수리 준수수칙

1. 항만 내 정박 또는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박수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의 잘 보이는 곳에 선박수리 허가서(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부근에 위험물을 취급(하역) 중일 때에는 일체의 화기성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 전 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구역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6. 기상 특보발령 등 기상악화 시 선박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선박수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게 하여 항만 내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8. 반드시 무가스(GAS FREE)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가스 유입 및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고소(높은 곳)작업 시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설치·준비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0. 밀폐구역 작업 시 작업구역 진입 전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1. 부두에 계류하여 작업하는 선박은 해당 부두 운영사에 작업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유사시 연락 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2. 선박수리 시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및 작업절차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13. 선장과 선주는 상기 수칙을 준수하여 선박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허가조건 위반 시 선박수리허가(신고)가 취소되며 우리청 관계 공무원의 선박수리현장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